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814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하보람(기소), 김찬구(공판)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B'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및 작업실에서, 위 채널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상저작물인 영화 'F'을 줄거리 및 결말이 포함되어 있는 핵심 장면으로



구성된 16분 42초 상당의 영상으로 편집한 후 'G' 제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재산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수익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이세창 _____